

대법원 2018. 1. 25 선고 2017다4986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. 25 선고 2017다49860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7. 9. 27 선고 2017나1514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7. 2. 3 선고 2015가소84853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(변경 전: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)

피고,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

판결 선고 2018. 1. 25.

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7나151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기택

주심대법관김신

대법관박상옥

대법관박정화